



즉시 배포용: 8/5/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과속단속 주간 엄중 단속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과속 차량과 난폭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1주일에 걸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속 단속 주간 캠페인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이뤄집니다.

“과속과 난폭 운전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께서는 책임 있게 운전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자, 승객, 보행자들을 위해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속은 뉴욕주내 모든 치명적 충돌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 뉴욕주에서 352명의 사람들이 과속 관련 충돌로 사망했고 거의 19,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Joseph A. D’Amic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 기간과 1년에 걸친 단속 기간 동안 우리의 목표는 뉴욕의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자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방어적인 운전을 하면 치명적 충돌 발생 수를 줄이고 고속도로에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름의 “과속 단속 주간” 동안, 주방위군은 표시가 되어 있는 뉴욕경찰차량과 **CITE(Concealed Identity Traffic Enforcement)** 차량을 단속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CITE** 차량을 이용하면 방위군이 운전 중 법을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이동 차량에 섞여 다니지만, 일단 비상등을 켜면 긴급 차량으로 그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주방위군은 또한 부주의한 운전자나 장애를 입은 운전자,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차량 동승장, 뉴욕주 **Move Over** 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포함해 다른 교통 위반사항들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 8월 과속 단속 주간 캠페인 당시, 뉴욕경찰은 22,000여건의 교통위반 범칙금을

발부했습니다. 이 범칙금 발부서 중 10,000여장은 과속 위반과 관련된 것이고 600여장은 Move Over 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14년 8월 6일-12일 과속 단속 주간에 발부된 범칙금 발부서

주방위군	지역	과속 범칙금 발부서	Move Over 법	부주의 운전	총 발부서
A	Western New York	912	25	135	2,212
B	North Country	564	22	49	1,466
C	Southern Tier	869	125	67	1,762
D	Central New York	926	53	103	2,134
E	Finger Lakes	980	69	99	2,534
F	Upper Hudson Valley	1,549	112	67	3,067
G	Capital Region	902	55	94	2,035
K	Lower Hudson Valley	1,404	64	71	2,634
L	Long Island	537	2	70	1,397
T	New York State Thruway	1,623	95	101	2,935
Totals		10,266	622	856	22,176

과속 단속 주간을 위한 자금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의 교부금에서 제공됩니다.

고속도로에서 55 mph로 달리거나 65 mph라고 표시된 지역을 달릴 때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최소 45달러/최대 150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달러/최대 300달러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달러/최대 600달러

재범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최소 45달러/최소 300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달러/최대 450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달러/최대 750달러

3번째 위반 시

제한 속도에서 1 - 10 mph– 최소 45달러/최대 525달러
제한 속도에서 11- 30 mph – 최소 90달러/최대 675달러
제한 속도에서 31 mph 이상 – 최소 180달러/최대 975달러

법원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운 또는 빌리지 법원 - 93달러
기타 법원(시 교통 법원, 등) - 88달러

위반 벌점 구조:

제한 속도에서 1-10 mph = 3점
제한 속도에서 11-20 mph = 4점
제한 속도에서 21 - 30 mph = 6점
제한 속도에서 30 - 40 mph = 8점
제한 속도에서 40 mph 이상 = 11점 (운전 정지 사유)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